

---

#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 계획(안)

(\*보건복지부의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---

2022. 11.



노인복지과

# 1. 사업근거

- (근거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
  - \* 법령 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('23.6.22~)
- (목적)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안전 관리

# 2. 지원대상

- (지원대상) 법 시행일('23.6.22.) 운영 중인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\*
  - \* 노인의료복지시설 :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- (제외대상)
  - 법령상 CCTV 설치기준(참고1)에 부합되는 CCTV 기설치 시설
  - 입소자 또는 보호자 전원 '미설치' 동의 후 시장에 신고한 시설
    - \* 서면동의서 사본 첨부 및 시군구 신고(유효기간 1년 이내)
  -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종사자 전원 동의 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 기설치 시설
  - 휴원·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
    - \* 휴원 시설 : 법 시행 기준일('23.6.22.)내 운영 재개 예정일 경우 신청 가능

# 3. 지원금액 [보조금80%지원, 시설 자부담20%]

- (노인요양시설) 4,950,000원 **限**
  - \* 실제 지원금액 : 3,960,000원 (자부담 : 990,000원)
- (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2,750,000원 **限**
  - \* 실제 지원금액 : 2,200,000원 (자부담 : 550,000원)

 **지원금액 외 추가 설치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자부담 하여야 함.**

## 4. CCTV(카메라, 저장장치, 녹화기) 설치기준 및 장소

구분		내용
카메라 및 녹화기	화질	HD급 이상
	저장기능	① 초당 (10장이상)의프레임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한 기계 ② 60일 이상 저장 가능
	주의사항	① 임의 조작이 가능하거나, 녹음기능 있는 CCTV 설치 불가 ② 일정한 장소, 방향 지속 촬영이 가능한 CCTV
저장장치	① 잠금장치 있는 별도 공간에 설치 및 보관(관리책임자: 시설장) ② 허가된 종사자(관리자-지정 必)에 한하여 접근 가능	
필수 설치장소	① 모든 공동거실(복도포함) ② 침실(단,입소자 또는 보호자 전원동의 필요) ③ 현관(외부에서 출입하는 출입로) ④ 물리(작업)치료실 ⑤ 프로그램실 ⑥ 식당 및 조리실 ⑦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⑧ 엘리베이터 등 (※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위해 반드시 1대 이상 설치)	
안내판	설치목적, 장소,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, 관리책임자(성명 및 연락처)	

## 5. CCTV 설치 지원 세부계획(안)

○ (지원방향) 법 시행일('23.6.22.)이전까지 모든 시설에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CCTV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○ (지원방법)(안) \* 추후 결정

- (지원안 1) : 시설별 개별 계약 통한 ‘지원금 지원’
- (지원안 2) : 市 경쟁입찰 통한 계약 ‘설치 지원’

\* 설치가능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업체(면허보유업체)만 가능

### <정보통신공사법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규정>

- ①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는 정보통신설비공사로 규정(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1)
- ② 정보통신설비의 공사(설치및유지·보수)는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함(법 제3조)
- ③ 다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는 공사제한의 예외

#### ○ (지원절차)

- 설치 전 자체 계획 수립(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 포함)
- 지원 신청서 제출
- 시 노인복지과 승인 후 설치비 또는 설치 지원
- 설치 확인(검수) 및 정산(반납 등)

#### ○ (렌탈 설치)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나, 렌탈 비용은 예산 지원 불가

## 6. 행정사항

- ('22.11.) 예산 집행 방식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 제출
- ('23. 3.) 국·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
- ('23. 5.) 각 시설별 CCTV 설치 완료
- ('23. 7.)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

---

(참고) 보건복지부 일정(안)

- 예산(안) 확정 내시 통보('22.12월)
 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공포(~'23.4.)
  - 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상도 등 고시 개정·발령('23.5.)
  - 노인요양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 라인 개정 및 배포('23.6.)
-

## 참고1

#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기준(안)

##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안)

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1의5]

###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기준(제25조의2 관련)

#### 1. 설치기준

- 가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공동거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, 그 영상정보를 녹화·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나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공동거실(복도포함), 침실, 현관(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), 물리(작업)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·조리실,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,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 다만,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**침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** 촬영할 수 있다.
- 다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공동거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라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,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.
- 마.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**고해상도[HD(High Definition)]급 이상**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)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.
- 바.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**화질 기준(HD급)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**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.
- 사. 장기요양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**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**
  - 1)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
  - 2)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,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
  - 3)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아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.

#### 2. 관리기준

- 가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**관리책임자**는 **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**이 된다. 다만, 지정된 **종사자(관리자)**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, 관리자로 지정된 종사자는 장비를 **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**하여야 한다.
- 나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**고해상도[HD(High Definition)]급 이상**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)의 화소수로 **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**하여 운영되어야 한다.
- 다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용·남용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라.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녹화(저장)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야 하고, 허가된 종사자에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마.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## 참고2

#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항목 별 지원단가 등

### 1. 화질 등급에 따른 픽셀 수 기준

구분	가로 픽셀(A)	세로 픽셀(B)	값(A*B)	해상도
HD급	1,280	960	1,228,800	130만화소
	1,280	1,024	1,310,720	
	1,440	1,080	1,555,200	150만화소
Full-HD급	1,920	1,080	2,073,600	210만화소
	1,920	1,280	2,457,600	250만화소
Ultra-HD급	3,840	2,160	8,294,400	830만화소

### 2. 채널별(카메라+녹화기) 설치비 단가

(단위:천원)

구분	단가	보조금	자부담	지원내용
4ch	1,430	1,144	28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ch 단가 한도내 지원</li> <li>노인요양시설 16ch 단가 한도내 지원</li> <li>시설종류별 단가 한도 내에서 카메라 추가 가능 (카메라 1대 단가 300천원 초과 불가)</li> <li>필수 설치 장소 외 지원 불가</li> <li>(4.저장장치 설치비)와 중복 지원 불가</li> </ul>
8ch	2,750	2,200	550	
16ch	4,950	3,960	990	

※ 예)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ch 설치 : 4ch 1,430+카메라 2대 600=2,030천원 기준

### 3. 카메라 설치비 단가

(단위: 천원)

단가	보조금	자부담	지원내용
300	240	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CCTV 카메라 1대당 지원한도 30만원</li> <li>노인요양공동생활 8대, 노인요양시설 16대 이하 설치비만 지원</li> <li>카메라만 지원 요청 시 : 인건비 100,000원 적용 가능</li> <li>필수 설치 장소 외 지원 불가</li> <li>(4.저장장치 설치비)와 중복 지원 불가</li> </ul>

### 4. 저장장치 설치비 단가

(단위: 천원)

단가	보조금	자부담	지원내용
750	600	1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CCTV 카메라 기설치 시설이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녹화기 교체 시 저장장치 변경 또는 추가 가능(단가한도 내지원)</li> <li>설치단가(750,000원)=장치비(650,000원)+인건비(100,000원)</li> <li>(2.채널별 설치비) 및 (3.카메라 설치비)와 중복 지원 불가</li> </ul>